일제 식민지정책의 '한국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요지)

신용하

1. 문제의 한정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자민당 정권이 출현한 전후시기를 계기로 과거 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통치(1910~1945)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아베 일본 수상은 그 이전부터 일본 군국주의·제국주의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태평양전쟁 도발을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군국주의 부활론자 집단의 지도자 중의 하나였다.

이번에 아베는 재차 수상이 되자, 과거 일본침략군의 생체실험 및 세균전 부대인 731부대까지 정당화하기 위해 731의 번호를 붙인 군용연습기에 탑승해서 승리신호의 손짓을 한 사진을 촬영하여 홍보한 것이나, 96호 번호를 붙인 군용연습기에 탑승해서 동일한 제스추어의 사진을 홍보한 것은 모두 일본 헌법 제96조와 제9조를 개정하여 대외전쟁을 할 수 있는 대외적 군국주의 부활을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997년 미·일방위협력 40개 가이드라인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고, 1999년 '유사 3법'을 통과시킨 후부터 '극동'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해상 경찰권과 작전권을 갖게 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극동' 지역 안에는 한국·대만·필리핀이 포함된다고 공언했었다.

2013년 올해는 소위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고, 일본헌법 개정이 없이도 외국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거나 전투에 들어가면 일본군(자위대)도 외국과 공동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군은 한반도에 상륙하여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아베정권은 주장하고 있으며, 이때 '독도'를 침탈할 것임은 비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한국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할지라도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려면 먼저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종군위안부'의 동원을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식민지정책을 통하여 한국을 개발시키고 근대화시켜 준 혜택을 베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정통과를 위해 이 논리에 따라서 이미 몇 종은 개정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광복 후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도 일제 식민지 '근대화' 정책의 연장에서 달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최근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개발' '근대화'를 일부 경제부문에서 인정하는 교과서가 1종 출현하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13년 10월 7일자에서 이를 대서특필 보도하기도 하였다.

오늘 박준서교수님 기념 포럼에서는 문제를 한정하여 과연 일제강점기에 일제 식민지정책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었는가의 문제를 좀 더 엄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일제 식민지정책의 한국 '근대화론'의 검토

(1) 근대화의 개념과 기준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대화의 세계 보편적인 사회과학적 기준을 잠정적으로 거론하고,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① 정치적으로 '근대화'란 독립한 국가 또는 정치체를 전제군주체제로부터 입헌대의체제로 변혁시키는 것을 보편적으로 의미한다.

② '경제적 근대화'는 일반적으로 중세적 봉건적 경제 조직과 생산 방식으로부터 근대 산업자본주의 공업화의 달성을 가리킨다.

③ 사회적으로 '근대화'는 신분제사회로부터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 구성하는 시민사회로 변동 이행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가리킨다.

④ 문화적으로 '근대화'란 특권층 중심의 귀족문화로부터 일반 시민 · 민중 중심의 민족문화로 변동 이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킨 것이다.

(2) 정치적 근대화 문제의 검토

먼저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전제군주제가 입헌대의체제로 변혁하는 한국 정치가 근대화되었는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독립국가였던 대한제국을 1910년 멸망시켜 주권을 빼앗고 아예 국가자체를 없애버렸으니 독립국가의 정치체제의 '근대화'라는 체제변화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1919년 상해에 한국 민족의 임시정부가 모든 종류의 전제군주체제를 청산하고 민주공화(民主共和)체제로 수립되었다. 이것은 망명 임시정부의 형태였지만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으며, 부분적으로 정치적 '근대화'가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한국민족의 이 근대적 임시정부를 主敵으로 정의하고 이의 말살을 위한 온갖 탄압책을 강행하였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자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 憲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공포하였다. 그 대신 일제는 총독의 명령을 制令이라 이름 하여 총독이 제령으로 통치함을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일제 총독은 전제적 권력으로 제령을 남발하면서 주로 '명령'에 의한 폭압통치를 강행하였다. '식민지법'도 '제령'과 마찬가지였다. '제령'·'명령'에 의한 통치가 전근대 형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한국의 주권 자체를 말살하고 한국인의 정치 근대화 운동을 主敵으로 규정하여 말살하려고 탄압했으니, 일제 식민지 통치는 한국의 '정치적 근대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강행한 것이었다.

(3) 사회적 근대화 문제의 검토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신분제가 폐지되고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는가?

한국사회에서 신분제는 일제가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조선 왕조 말기 1894년 동학

농민혁명운동과 갑오개혁으로 폐지되고, 그 후 시민의 기본권은 법률에서도 급속히 제정 보장되기 시작하여 구한말에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일제 강점을 맞게 되자 성장해가고 있던 시민권은 원천적으로 말살되고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은 갑자기 중단당하고 저지당하였다.

일제 식민지 통치는 한국인에게는 기본권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권, 평등권, 언론과 출판의 자유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시민저항권, 국민주권, 국민참정권 그 어떤 것도 모두 말살하여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한국인은 기본적 시민권마저 모두 박탈당하고 완전히 無權利한 상태의 예속민적 생활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정책은 한국인에게 공공연히 '민족차별'을 제도화하여 억압하였다. 예컨대, 한국인은 일본인과 동일직장에서 동일한 시간의 동일한 작업을 하여도 '죠센징'(朝鮮人)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본인의 약 50% 밖에 지불하지 않고 '민족차별'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민족차별'은 직장생활, 교육, 공공활동 … 등 모든 사회생활에 제도화하여 가시적으로 적용하였다.

막스 베버는 일찍이 인도의 카스트제도의 기원이 정복자가 피정복민족을 총체적으로 차별화하여 누적시킨 결과임을 밝힌 바 있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한국민족을 총체적으로 차별화하여 일본민족 보다 한 단계 천민화된 일본제국의 무권리한 천민층을 만들어서 使役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 속에서 오직 극소수의 친일 매국노들만 작위를 주어 일본귀족을 만들고 나머지 한국인 모두는 모두 시민권을 박탈해서 무권리한 총체적 식민지 천민층을 만들었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한국의 '사회적 근대화'는커녕 한국의 '사회적 근대화'와 시민사회의 성립을 원천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획책한 것이었다.

(4) 문화적 근대화 문제의 검토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한국민족의 근대문화가 성립되었는가?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同化' 정책이란 이름 아래 한국민족과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을 때로는 교활하게 때로는 폭압적으로 강제했다. 그리하여 한국 언어, 한글, 한국 민족문화, 한국역사, 한국 문학 · 예술들을 말살하려고 획책하였다.

이속에서 한국의 지식인, 문화인, 문학 · 예술인들이 민족의 소멸을 방지하고 민족과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저항해 싸우면서 한국의 근대적 문학 · 예술을 정립 발전시키려고 투쟁하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의 근대화' 부문에서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민족별' 분류 고찰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즉 일제 '식민지 정책 부문'과 '한국 문학 · 예술인부문'을 반드시 준별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립 · 갈등했으며, 일제는 탄압자였고 한국 문학 · 예술인들은 피탄압 · 저항자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한국민족의 '문화 근대화'를 추진한 일이 없었다. 도리어 한국 민족문화를 말살하려고 획책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한국문화 말살정책 하에서도 한국민족의 선구적 문학 · 예술인들은 불굴의 투지로 일제탄압에 저항해 가면서 한국 언어와 문자로 근대적 민족문화 예술을 창조 발전시키려고 분투하였다.

특히 3 · 1운동의 전 민족적 봉기로 일제 식민지통치가 대 타격을 입고 비틀거린 시기에는

약 15년간에 걸쳐 한국의 문학 · 예술인들이 정력적으로 눈부신 문화 창조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근대문화와 문학 · 예술 창조에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문화적 근대화'의 성과가 아니라 일제의 탄압에 저항 투쟁해 가면서 '한국민족 문화 · 예술인 부문'이 이룩해 낸 성과였다는 사실이다.

일제가 탄압 · 검열을 자행하여 지금도 알아볼 수 없는 네모딱지 먹활자와 XXX표의 검열 불통과 삭제 부분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한용운·이상화·이육사·윤동주를 비롯해서 실로 수많은 문학 · 예술인들이 투옥당하고 고문당한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일제는 한국민족과 민족문화의 소멸을 위해 한국어 말살정책을 강행하고 일본어를 상용어로 강제하였다. 일제는 관청은 물론이고 상점 · 극장 · 운동장 등에서도 오직 일본어만 사용 방송하도록 하였다. 우체국 · 철도 · 교통 · 통신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표와 통화를 금지시켰다. 한국어 말살과 일본어 사용은 전체 사회생활에 강제되었다. 그러나 1943년에도 일본어 해득자는 조선인의 약 22%에 불과했으며 한국인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 생활을 강제당한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한국의 '문화적 근대화' 추진은커녕 '문화적 근대화'를 저지하고 탄압했으며, 아예 한국민족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획책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5) 경제적 근대화 문제의 검토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한국경제는 봉건제·반봉건제가 해체되고 근대 산업주의가 형성되었는가?

일제의 경제부문의 식민지정책은 한국을 일본을 위한 ① 식량공급지 ② 원료공급지 ③ 독점적 상품시장 ④ 식민지 초과 이윤의 수탈지 ⑤ 저렴한 노동력 공급지 ⑥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개편하여 "수탈의 극대화"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 위에 1930년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① 백주에 식량과 물자를 지정해서 강탈해가는 '공출제도' ② 노동력의 강제 징발인 '징용' ③ 한국청년들을 일제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끌고 간 '징병' ④ 12세~40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한국여성에 대한 여자정신대 · 종군위안부 징발의 악랄한 식민지정책을 자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 가운데 식민지 농업정책으로서 일제가 1910~1918년 강행한 소위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권력으로 한국국토 총면적의 50.4%를 일제 조선총독부 소유로 무상으로 약탈한 토지약탈정책이었다.

일제는 이 과정의 조선왕조의 황실소유지와 公有地를 총독부소유지('국유지')로 편입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사유농지 약 9만 6,700정보와 사유림私有林 약 337만 5,600정보를 무상 약탈하여 총독부 소유지로 강제 편입하였다.

그리하여 일제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말 의 총독부 소유지는 ① 농경지 등(垈 포함)이 27만 2,076정보, ② 총독부 소유임야(미개간기 포함)가 955만 7,586정보, ③ 기타 총독부 소유지가 137만 7,211정보, ④ 합계 1,120만 6,873 정보에 달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선국토 총면적의 50.4%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것이었다.

일제는 약탈한 농경지의 많은 부분은 조선인에게 소작을 주어 총독부 자신이 지주가 되고, 나머지 일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인 토지 회사들과 일본인 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하였다. 그리고 약탈한 임야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제 정책회사들과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무상 저렴하게 불하하거나, 무상 양여 · 대부하거나, 친일파 양성을 위해 살포한 소위 일제

'은사금' 수취자(주로 친일파 및 일제 작위 수여자)에게 저렴하게 불하해서, 살포한 '은사금'도 회수하고 친일파도 지주화하여 일제의 협력세력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1919년 2월 현재의 총독부의 직영 소유 농경지는 13만 7,225 정보였으며, 소작농은 30만 7,800여 호였다. 이 소작농가 호수는 당시의 순소작농가 호수의 28.7%에 달하는 방대한 비율의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 총독부는 조선 내 최대의 지주가 됨과 동시에 식민지 통치 권력에 의거하여 한국소작농을 가장 조직적으로 가혹하게 수탈한 대관료지주가 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대외적 군국주의 부활 추진자들과 국내 내응자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근대화'정책이라고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은 구한말의 반봉건적 지주제도를 폐지 또는 개혁하기는커녕 도리어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를 강화시키고 수탈도 강화하였다. 구한말 반봉건 지주제도의 소작료는 倂作法에서 총생산물의 약 50%, 賭作法(정조법)에서 총생산물의 약 25~33%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소작료를 병작법과 定租法을 모두 총생산물의 약 55%~60%로 인상시켰다. 병작법에서는 총생산물의 약 5~10% 포인트, 도작법(정조법)에서 총생산물의 약 27~30% 포인트를 인상시킨 것이었다. 소작기간도 종래의 무기한을 1~5년으로 한정하였다.

조선농민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약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했으며, 일제의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의 강화와 수탈의 강화에도 소작쟁의 등의 각종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일제는 언제나 헌병대 및 경찰력 등 무력으로 한국농민의 저항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를 적극 엄호하였다.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는 더욱 확대되어 자작농은 1913년 총농가 호수의 22.8%로부터 1944년에는 13.9%로 몰락했으며, 순 소작농은 1913년의 41.7%로부터 1944년에는 49.2%로 증가하였다.

한국농민의 저항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적극 엄호한 것은 일제의 무상의 토지약탈을 위한 것이었으며,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를 적극 엄호한 것은 한국인의 식량소비수준을 극도로 절하시키고 최대한의 잉여생산물을 짜내어 수집해서 일본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총생산물의 55%~60%를 현물소작료로 징수하는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가 일제의 목적에 적합한 제도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표1>과 같이 일제 강점기에 1910년과 1944년을 대비해보면 미곡 생산량은 54%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미곡의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435% 증가하여, 수탈이 극대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표 1> 일제하 미곡의 생산량과 수출량 증가 (단위: 천 석)

년 도	생 산 량	지 수	수 출 량	지 수
1910	10,406	100	770	100
1911	11,568	111	567	74
1912	10,865	104	1,198	156
1913	12,110	116	1,967	255
1914	14,131	136	1,332	173
1915	12,846	123	2,498	324
1916	13,933	134	1,652	215
1917	13,688	132	1,683	219
1918	15,294	147	2,250	292
1919	12,708	122	2,883	374
1920	14,882	143	2,091	272
1921	14,324	138	3,555	462
1922	15,014	144	3,210	417
1923	15,175	146	4,084	530
1924	13,219	127	4,886	635
1925	14,773	142	4,758	618
1926	15,301	147	5,785	751
1927	17,299	166	6,470	840
1928	13,512	130	7,021	912
1929	13,702	132	5,791	752
1930	19,181	184	5,170	671
1931	15,873	153	9,030	1,173
1932	16,346	157	7,506	975
1933	18,193	175	7,988	1,037
1934	16,717	161	9,931	1,290
1935	17,885	172	9,025	1,172
1936	19,411	187	8,948	1,162
1937	26,797	258	7,202	935
1938	24,139	232	10,997	1,428
1939	14,356	138	6,984	907
1940	21,527	207	602	78
1941	24,886	239	4,232	550
1942	15,688	151	6,273	815
1943	18,719	180	1,303	169
1944	16,052	154	4,121	535

자료: 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 發達篇』 및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 작성.

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은 1910년대에 12월 29일 會社令을 제정 공포하여 회사설립에 반드시 조선총독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해서 한국공업의 발흥을 사전에 권력으로 억압하고 한국을 일제의 완전한 독점적 상품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919년 3 · 1 독립운동의 폭발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1920년 4월 1일 회사령을 개정하여 회사설립을 허가제로부터 신고제로 개정한 후에는 일본자본을 이입시켜 민족차별임금제를 강화해서 식민지 초과이윤 보장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공연부문의 생산량은 1931년의 경우에도 총생산량의 23%에 불과하였고 농업생산이 총생산량의 63%를 차지하였다.

일제가 1931년 9월 18일 만주침략을 자행한 전후부터는 조선을 '大陸前進兵站基地'로 개편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한 군수공업단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광물자원에 근접한 함경남도 장진호 · 부전호에 발전시설을 세우고 이 일대에 각종 군수공장을 설치하였다. 흥남 조선질소화약공장, 장진강수력발전,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 제철공장, 일본마그네슘 금속공장, 제련공장 등이 그 대표적 공장들이었다.

이 공장들은 일본의 노쿠치, 미츠비시, 미츠이, 스미토모 등 일본 재벌들이 건설 주체였으나, 일제의 침략정책에 맞추어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넓게 울타리를 치고 일본군이 24시간 항시 경비를 했으며,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을 투입하여 극히 저임금의 강제 노동에 투입하였다.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은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완전히 일제의 노예노동처럼 사역 당했으며,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는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인 노역자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탈주하는 경우에는 마치 '도망병'처럼 취급되어 사살당하거나 가혹한 형벌에 처해졌다.

그러므로 1930~40년대 한반도 북부에 설치된 군수공업들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일반공업통계 안에 들어가 처리되어있다 할지라도, 일반공업과는 다른 '특수한 군수공업'이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일제가 만주침략, 중 · 일전쟁, 쏘 · 일전쟁에 군수물자와 무기를 공급하기 위한 병참공장이었다. 아예 한 지역을 '병참공장기지단지'로 책정하여 일본군의 철저한 경비 아래 일본인 기술자와 일본인 노동자 및 한국인 강제노역자를 투입하여 봉쇄된 상태로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일본군에 납품 공급하던 특수군수공업단지의 봉쇄된 공업이었다.

따라서 이 군수공업은 다른 일반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와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결여된 일본군의 공업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복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함경남도 일대 일본군 군수공업단지의 군수공장들은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모두 해체해서 소련으로 뜯어 갔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이것이 일반 식민지 한국경제의 공업이 아니라 일본군의 특수 군수공업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1930~40년대 공업부문에서 이러한 일본군 군수공업을 일반 공업통계 안에 포함시켜 마치 이 시기 식민지 한국경제에 '공업화'가 수행되었느니, '산업혁명'이 있었느니 속단하는 것은 일본군과 소련군도 생각하거나 하지 않았던 일을 무분별하게 억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일본군 특수 군수공업을 혼입시켜 식민지 수탈정책을 호도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계량적 증거로 들면서 이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계량화의 대전제가 되는 이질적 항목의 분류조차 모르는 통계처리의 미숙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표 2> 1940년 민족별 부문별 공장 공칭자본통계 (금액 단위: 천 엔)

종 류 별	조 선 인		일 본 인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인 쇄 제 본	1,500	43	2,000	57
금 속 공 업	6,100	2	373,000	98
기계기구공업	61,500	42	85,050	58
화 학 공 업	1,000	0	276,250	100
가스전기공업	-	0	553,030	100
요 업	-	0	53,245	100
방 적 공 업	14,000	15	76,600	85
제재급본제품	5,500	10	47,000	90
식료품 공 업	5,250	7	73,800	93
기 타	7,000	8	83,500	92
합 계	101,850	6	1,623,475	94

자료: 朝鮮銀行 調査部『朝鮮經濟年報』 1948년 판
주: 資本金 백만 원 이상에 한함

1930~40년대 경제 · 공업부문 통계에서 또 한 번 주의해야 할 것은 민족별 구분과 부문별 구분을 명백히 하는 일이다.

민족별로 구분해 보면, 1941년 현재 식민지조선내의 공업자본의 약 94%가 일본자본이었고, 한국자본은 약 6%에 불과하였다.

일제하에서 1930 · 40년대에도 한국민족경제의 '공업화'나 '산업혁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하의 일본군 군수공업을 무분별하게 포함해서 통계상으로 보아도 공업부문 자급률은 매우 낮았으며, 여전히 산업자본주의 확립 이전에 단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일본군 군수공업을 제외하여 별도로 고찰하면 일제하의 식민지 한국공업은 미미하여 '공업화' '산업혁명'의 훨씬 이전 단계에 머물면서 한국인 노동자를 민족차별임금으로 착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 엄호하고, 공업부문에서 산업자본주의도 확립하지 못한 채 한국을 독점적 상품시장으로 개편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경제적 근대화' 추진 · 실현은커녕 경제적 근대화를 본질적으로는 저지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일제 식민지 정책의 한국 '근대화' 저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전제군주체제를 입헌대의체제로 근대화시키기는커녕 한국의 주권 자체를 강탈해 소멸시키고, 한국인의 망명 임시정부의 근대체제는 '주적'으로 박멸하려 탄압하면서, 총독의 전제적 '명령'에 의해 식민지 통치를 자행한 것은 정치적 근대화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정치적 근대화'를 저지하고 소멸시켜 버린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사회적으로는 한국의 신분제 사회를 해체하고 시민권을 가진 시민사회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기본적 시민권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권, 언론 · 출판의 자유권, 집회 · 결사의 자유권, 주권, 참정권, 시민저항권 등 시민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고 무권리한 예속민으로 떨어뜨린 식민지정책은 '사회적 근대화'가 전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사회적 근대화'를 저지시켜 버린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귀족중심의 문화로부터 한국의 민중중심 민족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문화와 민족언어까지 아예 말살시키려 한 것은 한국의 '문화의 근대화'는 커녕 도리어 한국의 '문화적 근대화'를 말살시키려한 정책이었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구한말 반봉건 지주제도를 폐지 또는 개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를 엄호 · 강화하고 한국인의 산업자본주의 형성을 저해한 것은 한국의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 실현시킨 것이 전혀 아니었다. 도리어 그것은 한국의 '경제적 근대화'를 저해하고 저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때,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이 시기 한국의 '근대화'를 저해하고 저지한 정책이었다.

한국민족의 진정한 자주적 '근대화'는 그것을 저해 · 저지하고 있던 일본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일제 식민지정책을 폐지 박멸 청산한 후에야 가능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한국민족의 진정한 '근대화'는 1945년 8 · 15 광복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야 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4. 광복 이후 대한민국 고도성장과의 단속성

일본의 아베 정권과 자민당 군사대국화 추진자들은 1960년대부터의 한국의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의 기원이 일제의 식민지정책에서 나온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어불성설의 주장이고, 일제 식민지정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억설에 불과한 것이다.

첫째, 일제의 중화학공업 자본시설은 주로 38도선 북쪽의 북한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남한지역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예컨대 북한지역에 설치된 자본시설은 1940년 말의 경우 발전이 92%, 화학공업이 82%, 금속공업이 90%, 요업(窯業)이 79%, 가스전기업이 64%이었다. 반면에 남한에 배치된 시설은 주로 경공업으로서 인쇄제본업이 89%, 방직고업이 85%, 식료품공업이 65%, 목재품공업이 65% … 등이었다. 광복 후 한국의 고도성장은 업종에서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었다.

둘째,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직접지배'(direct colonial rule)의 유형이어서 기술자들을 일본인만 교육 · 훈련시켰고 한국인들에게는 '기능' 이외의 '기술'은 교육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컨대, 광복 직후에는 기관차가 있어도 기관수가 없어서 몇 개 안되는 철도 기차 운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 후 기술자 배양과 기술육성은 광복 후 한국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었다.

셋째, 1950~53년의 한국전쟁으로 일제가 남긴 자본시설들은 남 · 북에서 모두 철저히 파괴되었다. 특히 미 공군의 폭격은 일제의 자본시설들은 물론이요, 철도 · 교량 · 도로들도 대부분 철저히 파괴하였다.

남 · 북에서 공장 시설 등은 1953년 휴전전후 완전히 새로 건설한 것이다.

넷째, 1960년대 한국 고도성장의 주역이 된 기업들은 거의 모두 광복 후에 새로 창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여기서 길게 논의할 여유가 없지만 한국 고도성장 ·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된 1000개 기업을 뽑아서 그 실제 창립연도와 내용을 보면 그 99%이상이 광복 후 새로 창립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1960년대부터의 한국의 고도성장 · 경제발전 사이에는 '斷續性'(discontinuity)이 지배한다. 만일 '연속성'(continuity)이 있다면 기업가가 일제 강점기에 출생해 살았다는 생명의 '연속성' 정도이다.

오히려 광복 후 한국사회의 자유로운 발전과 '근대화' '현대화'를 위해서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淸算해야 할 과거의 부정적 '부담'이 되었다.

그것은 광복 직후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그러하다. 오늘도 '과거사 진상규명'에 일제잔재청산, 친일파 청산문제가 들어있는 것이 그 증거의 일부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저지하였다. 그것은 한국역사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준 뼈아픈 시기였다. 한국이 오늘날처럼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1945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을 타도하고 자주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